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
1. 개정이유

취약계층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추진이 필요함.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의 발생률과 유병률을 고려하고, 부정교합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, 임상진단이 명확한 희귀질환이면서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 가능한 질환에 대하여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자 함.
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(비급여대상)제1항에서 [별표2]로 정한 사항 중, 치과교정에서 요양급여 적용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며, 시행규칙에 질환명을 나열할 경우 순차적으로 급여대상을 확대할 때마다 규칙 개정이 수반되는 번거로움이 있어, 잦은 개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여로 인정하는 경우의 목적이 드러나도록 개정(별표 2 제2호 다목 개정).

2. 주요내용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2] 비급여대상(제9조제1항 관련) 제2호 다목을 “치과교정. 다만,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”

로 개정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미협의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전

3) 행정규제 : 사전규제심사결과 규제 없음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] 비급여대상(제9조제1항 관련)

2.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 중 “다. 치과교정. 다만, 입술입천장갈림증(구순구개열)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”를 “다. 치과교정. 다만,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2.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 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· 약제 및 치료재료	<좌 동>
다. 치과교정. 다만, 입술입천장갈 림증(구순구개열)을 치료하기 위 한 치과교정 등 보건복지부 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<u>제외한다.</u>	다. 치과교정. 다만, 선천성 기형으 로 인해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치 료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 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는 <u>제외한다.</u>